

붙임 1

기업규제 목록

연번	분야	관련법령 (세부법령·제도)	세부내용
1	데이터	분산에너지법 (「전력계통영향 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 별표 4, 13)	<p>■ 전력계통영향평가상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가감점 범위 합리화</p> <p>규제현황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항목의 가감점 범위는 항목 하나만으로도 지역 간 최대 30점 격차가 발생해 총점의 30%, 상정기준 70점의 약 42.9%에 해당하는 영향이 발생됨</p> <p>개선건의 단일 항목의 과도한 영향만 완화하도록 가감점 범위를 현행 ±15점에서 ±5점으로 축소해줄 것</p>
2	정보통신	국가공간정보 기본법 (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2)	<p>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 합리화</p> <p>규제현황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처리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지정하고,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</p> <p>개선건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처리 시 관리기관이 정보유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는 업무에 한하여 보안심사와 적합성 검증을 전제로 보안인증된 클라우드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함</p>
3	관광	관광진흥법 (관광진흥법 제4조)	<p>■ 야영시설 주재료 기준 합리화 및 안전기준 연동</p> <p>규제현황 조립식 돐텐트 등은 현행 규정이 ‘천막’을 주재료로 명시하고 있어, 재질 및 외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야영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</p> <p>개선건의 야영시설 정의를 천막에만 한정하지 말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비영구 조립식 재료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필요</p>
4	로봇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소방시설법 제2조)	<p>■ 순찰로봇 소화 모듈 법적 지위 마련</p> <p>규제현황 반자동 소화모듈은 현행 분류체계에서 법적 정의가 없는 현황으로 규정상 소화장치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단순히 보조적 장치로만 사용됨</p> <p>개선건의 로봇 탑재 소화모듈을 별도 정의하여 법적 지위 부여</p>

연번	분야	관련법령 (세부법령·제도)	세부내용
5	로봇	주차장법 (주차장법 제2조)	<p>■ 주차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</p> <p>규제현황 현행 법제상 ‘주차로봇’에 대한 별도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‘기계식주차장치’의 한 유형으로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.</p> <p>개선건의 ‘기계식주차장치’와 ‘주차로봇(지능형주차장치)’의 정의를 분리하여 「주차장법」 내에서 별도로 법률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</p>
6	드론	항공안전법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)	<p>■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에 대한 비행승인 일괄처리 근거 명확화</p> <p>규제현황 현행 규정은 최대 12월까지 승인 가능하다는 틀만 두고 있을 뿐, 저위험 반복비행을 표준화된 조건으로 일괄 승인하는 기준은 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별 심사 중심으로 운영</p> <p>개선건의 동일 기체·동일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위험 비행인 경우 건별 승인이 아닌 일괄 승인해줄 것을 건의함</p>
7	드론	판로지원법 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)	<p>■ 농업목적 드론의 경쟁제품 지정 범위 합리화</p> <p>규제현황 항공안전법 체계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자체중량 1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구매 보호제도는 25kg 이하에 머물러 있음</p> <p>개선건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에서 농업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한하여 150kg 이하까지 경쟁제품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함</p>
8	반도체	산업안전보건법 (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)	<p>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MSDS 작성기준 합리화</p> <p>규제현황 반도체 소재기업은 신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수십~수백종의 신규 화합물을 검토하고, 이 중 일부는 시험분석 등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하나, 모든 물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MSDS를 요구받으면서 개발 지연과 비용 부담이 발생</p> <p>개선건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성성분·물리화학성·안정성·독성·환경영향 등 시험자료성 항목에 한해 차등 기재할 수 있도록 별도 작성기준 마련</p>

연번	분야	관련법령 (세부법령·제도)	세부내용
9	ICT	농업기계화법 (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)	<p>■ 스마트 농기계(농업용 로봇) 제도상 지위 및 검정 제도 마련</p> <p>규제현황 현재 농기계 판매·유통을 위한 검정기준은 전통적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, 농업용 로봇의 전자화·전동화·AI 기반 자율화 등 기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</p> <p>개선건의 농업용 로봇을 기존 기계식 농업기계와 구분되는 별도 기종·관리범주로 명확히 하여, 농업용 로봇의 기술특성에 맞는 지위 부여</p>
10	로봇	지능형로봇법 (지능형로봇법 제40조의2)	<p>■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변경인증 제도 합리화</p> <p>규제현황 현행 제도상 색상이나, 난연재질 변경을 제외하고는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세부항목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에 변경인증 또는 신규인증을 받아야 함</p> <p>개선건의 로봇의 안전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관, 적재함, 부가 모듈 변경 등은 변경신고 등 간소화 처리 제도 마련</p>
11	복지	아이돌봄 지원법 (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2)	<p>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 완화</p> <p>규제현황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아이돌봄사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함</p> <p>개선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자-아이돌봄사를 매칭하는 온라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을 완화 적용</p>
12	배터리	폐기물관리법 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)	<p>■ 폐배터리 재활용 중간가공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</p> <p>규제현황 현행 기준이 NCM 계열 전기차 배터리를 전제로 설계되어,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원료임에도 니켈 기준 미달을 이유로 폐기물로 묶이는 사각지대 발생하고,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는 소성·건조 등 전처리가 사실상 필수임에도 ‘추가 가공 없이’ 사용할 것을 요구</p> <p>개선건의 유가금속 함유기준은 니켈 단일 기준을 니켈·코발트 등 회수 유가금속의 종류·함량 기준으로 전환하되, 배터리 종류 및 화학적 조성 특성을 고려하고, 가공공정 허용 범위는 원료 품질 확보를 위한 소성·건조 등 필수 전처리 공정은 ‘추가 가공’ 예외로 명시</p>